

지배구조내부규범

소관팀: 전략팀(2 차 조직)

2017. 01. 03 제정

2017. 02. 24 전면 개정

2017. 03. 29 개정

2017. 12. 22 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06. 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이하 "당행"이라 한다)가 주주와 당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6. 01.>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서 등기이사를 말한다.
2. '임원' :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당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영진' :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이사회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 16 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6. '금융관계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 3 조 (공시)

- ①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일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제 5 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 2 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하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행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3 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공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⑤ 이 규범과 관련된 공시의 주체, 점검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행의 「공시규정」 및 「공시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당행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의 구성현황

제 5 조 (이사회 의 구성)

- ① 이사회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6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 2 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⑥ 당행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5 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이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사의 직을 잃는다. 다만,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당행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람

제 8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 1 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당행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당행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당행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당행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당행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 9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상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당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사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경영계획 이행실적 및 종합적인 경영현황 분석
 2.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주주 및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당행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삭제 2020. 03. 30.>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 11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당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당행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당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 3. 당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 ④ 이사는 당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당행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진다.
 -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당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제 1 호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 1 호의 책임이 있다.
 - 3. 제 2 호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익을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⑥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당행(계열회사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당행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당행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당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당행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제 4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당행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행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당행은 사외이사가 당행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행의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당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당행은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 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14 조 (이사의 선임절차)

- ① 이사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 년(연임 시에는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 3 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정관 또는 내규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 4.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결의된 경우
-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기재한 소집통지서 및 회의자료를 이사회 개최일 3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 운영실적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 20 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당행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재선임시에 참고한다.
- ③ 당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당행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21 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당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운영위원회
- ② 당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제 1 항에 따른 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2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1 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당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⑥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4 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당행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승인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기상황분석결과가 반영된 자본관리(내부자본 한도설정 포함) 및 조달계획
 9.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0. 정부 정책 반영 또는 은행간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보수위원회)

- ① 보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보수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가 당행의 위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과 연계되도록 의사결정,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연차보상평가(annual compensation review) 실시 및 그 결과를 감독당국·주주에게 제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④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보수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위원회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8 조 (임원의 범위)

본 장에서 임원이라 함은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인 임원"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1 차 조직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이하 "등기이사 아닌 임원"이라 한다)를 총칭한다.
<개정 2020. 06. 01.>

제 29 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 7 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 ①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행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은행업 전반에 대한 경험 및 이해가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31 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 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 3 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 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당행은 준법감시인이 제 1 항 제 1 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2 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 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 2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당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제 1 항 제 1 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33 조 (은행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당행을 대표하고,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행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행의 업무를 분장하며, 제 11 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5 항, 제 6 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전결규정」상의 권한을 영위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관련 법령, 정관, 당행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권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 1.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 2.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의 조사
 - 3. 그 외 내부통제 관련 업무의 총괄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5 조 (임원의 선임)

- ①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 14 조(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며, 등기이사 아닌 임원 선임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 ③ 등기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 15 조(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 년 단위로 재계약 및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당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당행의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은행의 본질적 업무(은행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은행의 겸영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업무

제 37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당행의 의무)

- ①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당행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②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당행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38 조 (임원의 퇴임 등)

- ① 등기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6 조(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임기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정관 또는 내규상 당연 퇴직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선임절차에 준하여 퇴직처리)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39 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 ① 당행은 신임임원에 대하여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 ② 당행은 임원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40 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당행은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41 조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 ①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규정」, 「임원보수규정」 및 「기타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제 1 항의 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지표, 개별 KPI 및 비계량 평가 등을 활용하여 정한다.
- ③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에 반영한다.

제 42 조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당행은 임원에 대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연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의 보수는 당행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원보수규정」 및 「기타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43 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당행을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주주, 관련기관 등 당행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 2. 당행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 3. 기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의 결의로 1 인 또는 수인을 선임한다. <개정 2020. 03. 30.>
-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4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당행은 당행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대표이사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는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행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당행 운영 및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 회 이상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 승계원칙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45 조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지원)

- ① 인사/경영지원팀(2 차 조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 06. 01.>
- ② 인사/경영지원팀(2 차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 06. 01.>
 - 1.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대표이사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인사/경영지원팀(2 차 조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 2 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06. 01.>

제 46 조 (대표이사의 자격)

- ① 대표이사는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7 조 (대표이사 후보자의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검증한 후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당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48 조 (대표이사 추천 관련 공시)

당행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시지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제 49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당행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은 제 14 조(이사의 선임절차), 제 15 조(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 및 제 16 조(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당행은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를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부칙 (2017. 01. 03)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1. 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2.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02. 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3.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03. 27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2)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0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6. 0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6. 0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 3 조 제 2 항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제 3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 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당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당행(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사항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제 4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 당행과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나. 당행의 대표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라. 대표이사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

바. 이사회의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별표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 3 조 제 3 항 관련)

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 인 기준 최고 지급액
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